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435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1. 5. 25.

4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Ⅱ. 제안이유

- 1.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및 「서울특별시교 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'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'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기 위함
- 2.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,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,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- 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 규정에 따라「2021년도 서울특별 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함

Ⅲ. 주요내용

1. 기금 설치개요

o 설치년도 : 2021년

o 기금 조성 총규모: 385억원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′20년도 말	′21년도 기금운용계획		′21년 말 조성액	비고
기급경	조성액(a)	수입(b)	지출(c)	(d=a+b-c)	미끄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-	38,459,744	0	38,459,744	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, 「지방 재정법」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2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협 의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35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기금 개관

○ 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'기금')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교육시설법')1)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시 설의 개선 및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에 소요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'그린스마트미 래학교'의 교부금을 매년 교부할 예정에 있는바, 해당 사업비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¹⁾ 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 경개선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따라서 동 기금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교육부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.

나. 수입계획

- 2021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4억 1천 1백 만원, 이자수입 4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84억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는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3조제1항에²)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, 동 기금의 수입재원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4억 1천 1 백만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비(그린스마트스쿨 설계용역 비)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 동 기금의 수입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비가 아닌 기금전 출금(820-01)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는바,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편성으로는 동 기금으로의 전출이 불가한바,

정상적으로 동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의 세출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. 지출계획

○ 한편 동 기금은 실제 사업진행을 위한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는바, 이는 동 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었고, 기금의 목적에 맞는 시설환경 개선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각종

²⁾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^{1.}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
^{2.}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^{3.}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
^{4.}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^{5.} 그 밖의 수입금

투자심사, 그리고 사전기획 등의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, 2021년도에 별도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타 당한 측면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.

라. 끝으로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에 따라 '중기지방재정계획'에 기금의 운용방향 등을 반영하고, 이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중기재정계획(2021년~2025년)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8조의2³⁾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나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.
- 이는 동 기금이 「교육시설법」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법정기금이 나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지난 제 300회 임시회(2021.5.24.)를 통해 제정되었는바,

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시키고, 기금운 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 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·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⁴⁾,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시는 것 또한 추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

³⁾ 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^{4) &#}x27;2021~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', 행정안전부(2020.7)에 따르면, "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, **투자사업비의 경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 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**"이라는 예외 사항을 정하고는 있으나 기본적 으로는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.

할 것인바,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 계 법 령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교육시설법)

[시행 2020. 12. 4.] [법률 제16678호, 2019. 12. 3., 제정]

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 - 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- 3.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 - 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 - 5. 그 밖에 시 · 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- ④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31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
- 1. 교육시설의 안전점검,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
- 2.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- 3.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
- 5.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- 6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「지방공기업법」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 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 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